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189호)
- 김의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191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193호)
- 김의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198호)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11호)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12호)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16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4
1. 개정배경	4
2. 7개 법률의 주요내용	5
3. 개정안 검토	8

I. 제안경위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동아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7. 감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7. 7개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배경 및 취지

7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를 위한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취지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은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i)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에 따라 ii)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인 신설하는 내용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은 i)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ii)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한 영장의 청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집행만 가능하게 하며, iii)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상호 협력으로 대체하고, vi)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v) 검사의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의신청·재정신청권자 확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2. 7개 법률안의 주요내용

1) 기관 명칭 등의 정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검사징계법」 등 7개 법률 28개 규정을 정비함.

2) 검찰청 수사관 직렬 정비 및 검사의 징계종류 정비

「검찰청법」의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이 「공소청법」에서 ‘형사법무직렬’로 변경됨에 따라 「법무사법」 제5조의2의 검찰청 수사관 직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소청법」에서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검사 징계 중 파면에 관한 사항¹⁾을 「검사징계법」 제3조에 추가함.

1) 「공소청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관련 정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신설된 사항을 반영함.

4) 검사의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반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폭처법상 주요 범죄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사를 게을리 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검사장이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 따르지 않는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함.

5) 부칙

「공소청법」의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에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의 검찰청 직원이 각각 공소청 및 중대범죄사수사청으로 이관 또는 임용됨에 따라 법무사 등 자격시험의 일부가 면제의 대상이 되는 기존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경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특례 등을 보완함.

[7개 법률 개정 내용 요약]

연번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페이지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6조, 제7조의4, 제8조, 제23조	검사 징계 관련(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1
		제3조	징계 종류(파면 추가)	공소청법 내용 반영	
		제5조	징계위원회 임원 임기 변동 [기존 3년 → 1년(+1+1, 총 3년)]	위원임기 변경	
2	법무사법	제2조, 제5조의2, 제23조	법무사 업무, 시험 면제(검찰사무직렬), 사무원 범죄경력조회(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9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11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검장 지명(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1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검사지휘 및 징계요구 권한 삭제	삭제	18
5	형법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검찰의 선거방해죄(검찰 명칭 변경)	검찰 명칭	16
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7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정의, 시스템 운영 협력의무, 협의회 구성, 위임규정(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14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3, 제12조, 제16조, 제111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구분수용의 예외, 신입자의 수용,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9
		제87조	유치장(중수청 유치장)	중수청 신설	

3. 검토의견

7건의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검찰청법」에서 “검찰청”이 검찰 전체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과 달리,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은 종전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점에서,²⁾ 정비 대상 법률에서 해당 용어가 의미하는 기관의 범위(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지청)를 명확히 하였고, 검사의 사경의 수사지휘권 삭제 및 중수청 신설 취지를 반영하는 등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검사징계법」 제5조의 징계위원회 위원 임기조항의 변경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삭제 여부, 「형법」의 개정조항에서 ‘검찰’을 ‘검사직무’로 변경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공소청법」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u>검찰</u>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u>검찰</u>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u>검찰청</u>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 ----- ----- -----. 1.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u>법원·검찰청·경찰관서</u>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 <u>법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경찰관서</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유치장) <u>경찰관서</u> 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87조(유치장) <u>경찰서등 수사기관</u> ----- -----.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u>검찰청</u>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참고자료 통보) ----- ----- ----- ----- <u>공소청</u>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 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제5조(<u>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검사장</u>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u>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 ----- ----- <u>지방공소청장</u> ----- ----- ----- ----- ----- ----- ----- -----.
1. ~ 53. (생략)	1.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① (생략)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② -----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

----- 지방공소청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

----- 지방공소청장 -----

-----.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

할하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u>지방공소청장</u>-----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 ----- ----- <u>지방공소청장</u>----- ----- ----- ----- ② ----- ----- ----- <u>지방공소청장</u>----- ----- ----- -----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u>지방공소청장</u>----- ----- ----- ----- ----- -----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u>검찰청</u> , 경찰청, 해양경찰청,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6.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u>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u> -----.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u>검찰청</u> , 경찰청, <u>해양경찰청</u> 및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 ----- -----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u>대검찰청 차장검사</u> , 경찰청 차장, <u>해양경</u>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 ----- <u>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u>

<u>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u>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u>검찰청</u>, <u>경찰청</u>, <u>해양경찰청</u> 및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u>-----.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임규정)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u>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u>----- -----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の 懲役과 10年 以下の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u>검사직무</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u>검찰</u> ,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u>검사직무</u> ----- ----- ----- ----- ----- -----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u>검찰</u> ,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u>검사직무</u> ----- ----- ----- ----- ----- ----- -----.
第128條(選舉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舉에 關하여 選舉人, 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第128條(選舉妨害)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u> ----- -----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과 5年 以上の 資格停止에 處한다.	----- -----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u> ① <u>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삭 제></u>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u>검찰청</u> 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u>검찰청</u> 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 8. (생략) ② (생략)	제2조(업무) ① ----- -----. 1.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2. ----- <u>공소청</u> ----- -----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u>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u>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u>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u>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 ----- <u>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u> ----- ----- -----. ② ----- ----- ----- ----- 1. ----- <u>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u> ----- ----- ----- ----- ----- ----- ---

2. 법원, 헌법재판소, <u>검찰청의 법원 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u>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생략) 제23조(사무원) ① ~ ⑤ (생략)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 -----<u>공소청의 법원 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u>-----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무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지방공소청장</u>----- ----- -----. ⑦ ----- <u>지방공소청장</u>----- -----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제2조(징계 사유) ----- ----- -.
1. 「 <u>검찰청법</u> 」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1. 「 <u>공소청법</u> 」 제51조-----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u>해임(解任)</u> , <u>면직(免職)</u> , <u>정직(停職)</u> , <u>감봉(減俸)</u> 및 <u>견책(譴責)</u> 으로 구분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 <u>파면(罷免)</u> , <u>해임(解任)</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u>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u>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생략)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u>	② <u>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

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생략)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공소청
-----.

② ----- 파면, 해임-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파면, 해임-----

④ -----

----- 공소청-----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u>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u>가 소속하는 <u>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u>이 하고, <u>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② (생략)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u>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u>가 소속된 <u>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u>이 하고, <u>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u>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u>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